



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

주소: 우12461,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-181 4층/전화: 02) 3271-0457 / fax: 02) 718-1781 / 담당자: 오인중

문서번호 : 세가본 제 46호(총무-38)	선			지	
시행일자 : 천일국 7년 천력 12월 23일 (2020. 1. 17)	결			시	
수 신 : 전국 지구장 및 교구·교회장	접	일자		결	
경 유 :	수	번호		재	
참 조 :	처	리	과	공	
	담	당	자	람	

제 목 : ‘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’ 안내

1.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삼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2. 가정연합 본부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실시해 온 목회자 4대보험 정책에 따라 올해 4대보험 취득을 위해 목회자복지기금에 납부된 세금을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『편리한 연말정산』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및 간편제출 서비스를 구축, 운영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 전국 목회공직자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연말정산 개요 : 연말정산이란 목회자 및 공직자가 매월 받으시는 급여 중에 일정 세월에 따라 납부해 온 소득세와 주민세를 연말에 맞춰 정산하여 과부족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.

※ 납부하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필히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

나. 신고 대상 : 4대 보험에 가입된 목회자 및 공직자

다. 연말정산 산출 기간 : 2019년 1월 1일 ~ 12월 31일(1년 기간)

라. 제출 서류

1) 국세청 전산 자료
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상에서 [자료 제공 동의] 클릭

※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

※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 를 통해 공제 내역 확인 및 추가 가능.

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연금저축, 기부금, 월세 등)

※ 특히, 인적공제사항은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제신고서 작성 후 간편제출하기 메뉴를 통해 [자료 제공 동의] 클릭만으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담당자에게 제출되오니, PDF파일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(※온라인 동영상 안내자료: https://www.nts.go.kr/popup/pop_flash_player.asp?seq=158)

※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『**편리한 연말정산**』 서비스는 1월 15일,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정·제공은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오니 **1월 21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신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2)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

(협회 인사발령 후 처음으로 연말정산 신고하거나 부양가족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)

3) 기타 서류 :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 이외의 소득공제용 명세서

(기부금영수증, 연금저축, 월세계약서 등)

※ 단,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,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마. 제출 기한

1) 2020년 1월 29일(수)까지 : 각 교회에서 필요서류 일체를 교구로 제출

2) 2020년 2월 3일(월)까지 : 각 교구에서 협회 총무국으로 제출

바. 행정 사항

1) 문의처 : 총무국 오인중 차장 02)3271-0457

2) 협회로 현금하신 목회자십일조, 가정회비, 협회특별헌금(효정원, 기원절·성화절 특별헌금 등)은 협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(1/7) 완료하였으니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3) 국세청 입력 자료의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문서 : 1. 연말정산 간소화(간편제출) 서비스 안내서 1부.

2.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 1부. 끝.

회 장 이 기

